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간에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

원자력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간 원자력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최우선할 것임을 확인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협력을 확대·강화하려는 양국 공동의 희망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목 적

당사자는 호혜·평등에 기초하여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 제 2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1부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

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2부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로 첨부된 기구의 현장 제20조에 이 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의 현장 제20조에 따라 기구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라.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상사, 회사, 조합, 협회 및 일방당사자의 권한하의 기타 실체를 말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이라 함은 공급당사자에 의하여 장비의 설계·건설·운영·유지에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과학 또는 기술 자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다.

### 제 3 조 협력의 분야

이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간의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소형원자로 또는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

라. 핵원광의 탐사·이용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핵연료주기

마. 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

바. 입자가속기의 개발, 공급 및 이용과 가속기 기술의 이용

사.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

아.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자.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

차.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 제 4 조 협력의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 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 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 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실무집단의 조직
- 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
- 마. 관련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의 제공
- 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 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의 형태

## 제 5 조 이행약정

1. 이 협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은 당사자가 지명하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실시되어질 수 있다 ...
2. 당사자의 관련 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협정이나 계약은 당사자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 협력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건, 준수절차, 재정적 합의,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적절한 사항을 명시한다.

## 제 6 조 재이전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퍼센트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 및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그러한 동의에는 결과물인 20퍼센트 또는 그 이상으로 농축된 결과물인 플루토늄 및 우라늄이 저장·사용되어 질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다.

제 8 조  
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 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 9 조  
안전조치

1. 핵물질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의무는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와 기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2. 어떠한 사유 또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구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안전조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 제 10 조 정보 및 지적재산권

1. 당사자는 공급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정보의 사용이나 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령한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내의 인가 받은 주체 간에 이전되는 정보의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 비밀을 포함하여 이전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자와 이들의 관할기구 및 지명된 조직은 자국의 국내법령 및 당사자가 모두 가입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배포와 관련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협정, 약정 또는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 제 11 조 물리적 방호



